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의 분장사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추가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용어를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며,

법무부 소속기관 중 기관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해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 사무소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하는 대전소년원의 하부조직의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법무부에 대체복무교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소속기관 중 교정기관에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야간 교대근무 등에 필요한 인력 135명(6급 13명, 7급 19명, 8급 50명, 9급 53명), 출입국·외국인관리 기관에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교도소 및 구치소 야간 교대근무를 위하여 신규인력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정원 67명(6급 4명, 7급 6명, 8급 28명, 9급 29명) 및 정원 89명(6급 9명, 7급 11명, 8급 33명, 9급 36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의 체계적인 검찰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수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5급)을 검찰청 검찰사무관 정원 이체를 통해 증원하는 한편,

업무비중이 축소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부서장 분장사무를 업무비중이 확대된 부서장 중심으로 조정하며, 법무부 의료과장에 의사를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 단수직렬(서기관) 정원 1명을 복수직렬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3. ~ 8.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제2호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5호,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리·운용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관 국유재산관리
4.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지휘·감독
6. 범죄피해자 관련 일시적 보호시설의 관리·감독

제20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교무과장·분류보호과장·호송과장”을 “행정지원과장·교무과장·의료재활과장·분류보호과장·호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의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원의 의료재활 과정 운영
2. 소년원의 정규 초·중·고등학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학교 운영

3. 보호소년 교육과정의 편성·장학 및 학사관리
4. 보호소년의 특성화교육·직업능력개발훈련·생활지도·특별활동
및 봉사활동·심리치료 등 인성교육
5. 보호소년의 감호·포상·징계·면회·서신·외출
6. 신입학생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오리엔테이션 등 적응지도
7. 사회복귀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취업 알선 및 취업지원협의
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퇴원자의 출석·방문·통신지도 등 사후지도

제27조제3항 중 “외국인보호소”를 “외국인보호소(이하 “출입국·외국인
관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천공항출입국·외국
인청 총무과장, 이민특수조사대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관
리과장”을 “총무과장, 이민특수조사대장, 서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총무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관리과장이
총무과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7조제5항제6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1호) 중 “소내”를 “기관 내”로 하고, 같
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조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이민특수조사대장
을 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

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4. 송환귀국자의 인수 및 조사
5.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6. 외국인에 대한 거소와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통보

제27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심사과장”을 “국적·통합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적·통합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관리과장이 국적·통합과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7조제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내·외국인의 출입국”을 “국적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5항, 제8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적취득·상실 등 국적민원 상담·접수에 관한 사항

2. 국적 민원서류 관리 이송에 관한 사항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업무에 관한 사항

⑩ 난민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난민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관리과장이 난민과장의 사무를 분장
한다.

1. 난민인정심사 및 난민인정 등의 결정

2. 그 밖에 난민의 인정 및 난민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5항(종전의 제10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 및 이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5항(종전의 제10항)제3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의3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는 심사과장이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의 사무를 분
장한다.

제2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1과장·심사2과장·심사3과장·
심사4과장·심사5과장·심사6과장·심사7과장·심사8과장·심사9과장
·심사10과장·심사11과장·심사12과장·심사13과장·심사14과장·심
사15과장”을 “사범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범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조사과장이 사범과장의 사무를 분장하고,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범과장은 제7항의 조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8항의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제27조제1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2.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3. 보호명령서의 집행 및 보호외국인의 입·출소 관리
4.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서
5.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 관리
6.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영치품 보관
7. 보호외국인의 고충상담 및 해결지원

⑫ 보호과장은 제11항제3호부터 제6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제8항(종전의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국과장”을 “심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7항의 조사과장·제11항의 사범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의 총무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의 총무과장·제6항의 관리과장·제7항의 조사과

장·제11항의 사범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 분장한다.

제27조제8항(중전의 제13항)제1호 중 “입국심사”를 “출입국심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입항항공기”를 “내·외국인의 항공기와 선박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입국심사”를 “출입국 심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6.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얼굴 정보의 분석

제27조제8항(중전의 제13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5호) 중 “입국”을 “출입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국과장”을 “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입국허가”를 “지문찍기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7호) 중 “내·외국인의 출국”을 “사증발급인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제증명 발급
2. 외국인의 등록
3.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체류허가 및 재입국허가
4. 재외동포의 거소신고 등

6. 보호외국인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접수·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8. 사증발급인정 관련자료의 보존·관리 및 통계작성

⑩ 심사1과장·심사2과장·심사3과장·심사4과장·심사5과장·심사6과장·심사7과장·심사8과장·심사9과장·심사10과장·심사11과장·심사12과장·심사13과장·심사14과장·심사15과장은 제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항제7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제17항의 항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심사지원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심사과장이 심사지원과장의 사무를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의 총무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제27조제17항 중 “보호과장”을 “심사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사지원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심사과장이 심사지원과장의 사무를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의 총무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제27조제17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2.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3. 수사기관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 제공
4. 출입국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출입국심사관리센터 및 출입국심사장의 운영
7.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제증명 발급
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의 외국인 등록,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4호 및 제16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내국인·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항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⑱ 정보분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정보분석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심사과장이 정보분석과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7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식과장”을 “정보분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분석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심사과장이 정보분석과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7조제1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객·승무원의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4. 출입국 선박 등의 출입항보고서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입국심사 관련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8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항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⑰ 보안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보안관리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심사과장이 보안관리과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7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보안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안관리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심사과장이 보안관리과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7조제1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항 내 보안취약지역의 순찰 및 불법 출입국자의 조사
2. 불법 환승객의 조사 및 관리
3. 출입국심사장 보안 관련 상황실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불법출입국 예방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9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항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㉔ 감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분석과장”을 “감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 등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위·변조수법의 연구·분석
2.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위한 출입국사범의 조사
3. 위·변조여권의 식별요령 등에 관한 자료집의 발간 및 교육
4. 대내·외의 위·변조여권·사증 등에 대한 감식지원
5. 위·변조여권·사증 등의 감식장비 관리
6.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얼굴 정보의 분석
7. 그 밖에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감식에 관한 사항

제27조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무과장”을 “이민특수조사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의 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4.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해당 이민특수조사 대장이 소속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조사의뢰한 사항
5.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6.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제3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고발 및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의 심사결정

제27조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을 “의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내의 위생관리
2. 보호외국인의 건강진단 및 진료
3. 의료기기 및 의약품관리

제27조제2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비자센터장”을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보화 관련 기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2.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보존·관리
3. 정보화장비(서버, 통신장비 등)의 운영·관리
4.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통계작성
5.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정보화센터에 한한다)
6.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외부기관 제공과 관련 전산망 운영 및 관리
7.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정보화센터에 한한다)

제27조제2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관리과장”을 “전자비자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불법출입국 예방”을 “전자민원”으로 한다.

1. 전자민원으로 신청한 각종 허가 또는 신고처리에 관한 사무
2.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

별표 2의2 부서명란 중 “교무”를 “의료재활”로 한다.

별표 4의2 지원국(총무과·심사지원과·조사과·감식과·정보분석과·정보관리과·보안관리과), 심사1국(입국재심1과, 심사1과·심사2과·심사3과·심사4과·심사5과·심사6과·심사7과·심사8과·심사9과·심사10과), 심사2국(입국재심2과, 심사11과·심사12과·심사13과·심사14과·심사15과)란 중 “입국과, 출국”을 “심사지원과, 심사”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757”을 “761”로 하고, 일반직 계 “726”을 “730”으로 하며, 서기관 “18”을 “17”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2”로 하며, 교위·간호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 다음에 “시설주사보 1”를 신설하고, 보호서기 1 다음에 “식품위생서기 1”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 다음에 “공업서기보 2”를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757”을 “761”로 하고, 일반직 계 “726”을 “730”으로 하며, 서기관 “20”을 “19”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2”로 하며, 교위·간호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 다음에 “시설주사보 1”를 신설하고,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4 다음에 “식품위생서기 1”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 다음에 “공업서기보 2”를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130”을 “134”로 하고, 일반직 계 “116”을 “120”으로 하며, 검찰사무관(교수) “3”을 “7”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369”를 각각 “16,504”로 하고, 교감 “1,424”를 “1,437”로 하며, 교위 “1,788”을 “1,807”로 하고, 교사 “5,553”을 “5,603”으로 하며, 교도 “6,037”을 “6,090”으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66”을 각각 “2,568”로 하고, 출입국관리사무관 “100”을 “101”로 하며, 출입국관리주사보 “691”을 “692”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66”을 각각 “2,568”로 하고, 출입국관리사무관 “112”를 “113”으로 하며, 출입국관리주사보 “691”을 “692”로

한다.

별표 13 제2호6)을 삭제하고, 같은 호 1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인권국) ① ~ ④ (생략)	제7조의2(인권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 기 본계획 ----- --
3. <u>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지휘 · 감독</u>	3. <u>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리 · 운용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관 국유재산관리</u>
<u><신 설></u>	4. <u>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지휘 · 감독</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u><신 설></u>	6. <u>범죄피해자 관련 일시적 보호시설의 관리 · 감독</u>
5. · 6. (생략)	7. · 8.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소년원) ① · ② (생략)	제20조(소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행정지원과장 · 교무과장 · 분류보호과장 · 호송과장은 서</u>	③ <u>행정지원과장 · 교무과장 · 의료재활과장 · 분류보호과장 ·</u>

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④·⑤ (생략)

⑥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소년원·대구소년원·광주소녀원·전주소녀원·대전소년원·청주소녀원·안양소년원·춘천소년원·제주소년원 교무과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창업교육·상담·정보제공
및 창업보육원의 관리·감독
등 창업에 관한 사항

<신설>

호송과장-----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단서 삭제>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⑦ 의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원의 의료재활 과정 운영

2. 소년원의 정규 초·중·고등학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학교 운영

3. 보호소년 교육과정의 편성·장학 및 학사관리

4. 보호소년의 특성화교육·직업능력개발훈련·생활지도·

	<u>특별활동 및 봉사활동 · 심리 치료 등 인성교육</u> 5. <u>보호소년의 감호 · 포상 · 징 계 · 면회 · 서신 · 외출</u> 6. <u>신입학생의 개별처우계획 수 립 및 오리엔테이션 등 적응 지도</u> 7. <u>사회복귀대상자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취업 알선 및 취업 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u> 8. <u>퇴원자의 출석 · 방문 · 통신 지도 등 사후지도</u> ⑧ ~ ⑩ (현행 제7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⑦ ~ ⑨ (생략) 제27조(출입국 · 외국인청 등) ① · ② (생략) ③ 출입국 · 외국인청, 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및 <u>외국인보호소</u> 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4 의2와 같다. ④ 과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 로,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 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사무관으 로 보한다. 다만, <u>인천공항출입 국 · 외국인청 총무과장, 이민특 수조사대장, 서울출입국 · 외국</u>	<u>특수조사대장, 서울</u> ④ ----- ----- <u>외국인보호소</u> (이하 “출입국 · 외국인관서”라 한다)-----. ④ ----- ----- ----- ----- <u>총무과장, 이민</u> <u>특수조사대장, 서울</u> ----- -----

인청 총무과장 · 관리과장 및 부 산출입국 · 외국인청 관리과장 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 관으로,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 의 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서기 관 · 기술서기관 · 출입국관리사 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전 자비자센터장은 출입국관리사 무관으로 보한다.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 국 · 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 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총무과장, 국적 · 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 한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내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제증명 발급
7. 외국인의 등록
8.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체류허가 및 재입국허가
9. 재외동포의 거소신고 등
10. 외국인의 지문찍기에 관한 사항
11. 보호외국인의 복리후생에

-----.

⑤ 총무과장-----
-----. 다만, 총무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 · 외국인관서 에서는 관리과장이 총무과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u>관한 사항</u>	
<u>12.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접수</u> <u>· 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u> <u>발급</u>	<u><삭 제></u>
<u>13. 사증발급인정 관련자료의</u> <u>보존·관리 및 통계작성</u>	<u><삭 제></u>
<u>14. 그 밖에 사증발급인정에 관</u> <u>한 사항</u>	<u><삭 제></u>
<u>15. 국적취득·상실 등 국적민</u> <u>원 상담·접수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6. 국적 민원서류 관리 이송에</u> <u>관한 사항</u>	<u><삭 제></u>
<u>17. 그 밖에 국적 업무에 관한</u> <u>사항</u>	<u><삭 제></u>
<u>18. 난민인정심사 및 난민인정</u> <u>등의 결정</u>	<u><삭 제></u>
<u>19. 그 밖에 난민의 인정 및 난</u> <u>민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u> <u>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u> <u>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업무</u> <u>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1.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에 속</u> <u>하지 아니하는 사항</u>	6. ----- <u>기관 내</u> ----- -----
<u>⑥ 총무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u> <u>제5호까지 및 제21호의 사항을</u>	<u><삭 제></u>

분장한다.

⑦ 국적·통합과장은 제5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난민과장은 제5항제18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조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4. 송환귀국자의 인수 및 조사
5.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6. 외국인에 대한 거소와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통보

<삭 제>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및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과장은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6항에 따른 사범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각각 분장하고,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1.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 내·외국인의 항공기와 선박의 검색
3. 내·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심사

⑨ 국적·통합과장-----
-----. 다만, 국적·통합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관리과장이 국적·통합과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적취득·상실 등 국적민원상담·접수에 관한 사항
2. 국적 민원서류 관리 이송에 관한 사항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업무에 관

	<u>한 사항</u>
<u>4.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u>	<u><삭 제></u>
<u>5. 그 밖에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u>	4. ----- 국적 업무----- -----
<u>6.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7.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u>	<u><삭 제></u>
<u>9. 송환귀국자의 인수 및 조사</u>	<u><삭 제></u>
<u>10.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u>	<u><삭 제></u>
<u>11. 외국인에 대한 거소와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통보</u>	<u><삭 제></u>
<u>12.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u>	<u><삭 제></u>
<u>13.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u>	<u><삭 제></u>
<u>14. 보호명령서의 집행 및 보호</u>	<u><삭 제></u>

외국인의 입·출소 관리

15.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서

<삭 제>

16.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 관리

<삭 제>

17.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영 치품 보관

<삭 제>

18. 보호외국인의 고충상담 및 해결지원

<삭 제>

19.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

· 얼굴 정보의 분석

<삭 제>

<신 설>

⑩ 난민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난민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관리과장이 난민과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난민인정심사 및 난민인정 등의 결정

2. 그 밖에 난민의 인정 및 난민 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⑩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
장한다. <단서 신설>

⑮ -----

----. 다만,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을 두지 않는 출
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심사
과장이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

2. 입출항 항공기의 검색
3. 내국인·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 심사
4. 그 밖에 내국인·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2.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3. 수사기관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 제공
4. 출입국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출입국심사관리센터 및 출입

사결정

2.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3. 보호명령서의 집행 및 보호외국인의 입·출소 관리
4.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서
5.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 관리
6.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영치품 보관
7. 보호외국인의 고충상담 및 해결지원

⑫ 보호과장은 제11항제3호부터 제6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국심사장의 운영

6의2.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제증명 발급

6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인(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
한다)의 외국인 등록, 각종 체
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의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4호 및 제16호
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
는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 각
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내국인·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⑬ 입국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분장한다. <단서 신설>

⑧ 심사과장-----
----- . 다만, 울산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7항의 조사과장·제11항의
사범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
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
사과장은 제5항의 총무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외국
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

1. 내·외국인의 <u>입국심사</u> 2. <u>입항항공기</u> 검색 3. 내·외국인 승무원의 <u>입국심사</u> 4. (생략) <u><신설></u> <u><신설></u> 4의2. 내·외국인의 <u>출입국에 관한 제증명 발급</u> 4의3. 난민인정심사, 난민인정 등의 결정 및 난민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외국인의 <u>입국</u>에 관한 사항 6. 제6항에 따른 총무과장의 <u>분장사항</u> ⑭ <u>출국과장</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의 <u>총무과장·제6항의 관리과장·제7항의 조사과장·제11항의 사범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 분장한다.</u> 1. ----- <u>출입국심사</u> 2. 내·외국인의 항공기와 선박의 ----- 3. ----- <u>출입국심사</u> 4. (현행과 같음) 5. <u>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u> 6. <u>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얼굴 정보의 분석</u> <u><삭제></u> <u><삭제></u> 7. ----- <u>출입국</u>----- <u><삭제></u> ⑥ <u>관리과장</u>-----
---	--

1. 내·외국인의 출국심사

2. 출항항공기의 검색

3. 내·외국인 승무원의 출국심사

4.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 집행

5. 외국인의 재입국허가

6.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신 설>

<신 설>

7. 그 밖에 내·외국인의 출국에 관한 사항

⑮ 조사과장은 제9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조사과장은 제9항제8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범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국인청과

1.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제증명 발급

2. 외국인의 등록

3.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체류허가 및 재입국허가

4. 재외동포의 거소신고 등

5. ----- 지문찍기에 관한 사항

6. 보호외국인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접수·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8. 사증발급인정 관련자료의 보존·관리 및 통계작성

9. ----- 사증발급인정-----

<삭 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조사과장은 제9항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①⑥ 사범과장은 제9항제12호부터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사범과장은 제17항에 따른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①⑦ 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서 신설>

<신 설>

2. 보호명령서의 집행 및 보호외국인의 입·출소 관리

①⑥ 심사1과장·심사2과장·심사3과장·심사4과장·심사5과장·심사6과장·심사7과장·심사8과장·심사9과장·심사10과장·심사11과장·심사12과장·심사13과장·심사14과장·심사15과장은 제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항제7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①⑦ 심사지원과장-----
-----. 다만, 심사지원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심사과장이 심사지원과장의 사무를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의 총무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1.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2.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

3. <u>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서</u> 4. <u>보호외국인에 대한 접견</u> 5. <u>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영치품 보관</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⑬ <u>감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u>	<u>사결정</u> 3. <u>수사기관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 제공</u> 4. <u>출입국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u> 5. <u>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등에 관한 사항</u> 6. <u>출입국심사관리센터 및 출입국심사장의 운영</u> 7. <u>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제증명 발급</u> 8. 「<u>출입국관리법 시행령</u>」 별 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의 외국인 등록,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9. 「<u>출입국관리법 시행령</u>」 별 표 1의3 제14호 및 제16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0. <u>그 밖에 내국인·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u> ⑭ <u>정보분석과장</u>-----
---	--

항을 분장한다. <단서 신설>

1.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 등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위·변조수법의 연구·분석

2.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위한 출입국사범의 조사

3. 위·변조여권의 식별요령 등에 관한 자료집의 발간 및 교육

4. 대내·외의 위·변조여권·사증 등에 대한 감식지원

5. 위·변조여권·사증 등의 감식장비 관리

6.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얼굴 정보의 분석

7. 그 밖에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감식에 관한 사항

⑪ 이민특수조사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서 신설>

----- . 다만, 정보분석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심사과장이 정보분석과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승객·승무원의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4. 출입국 선박 등의 출입항보고서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입국심사 관련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⑪ 보안관리과장----- . 다만, 보안관리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심사과

	장이 보안관리과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1. <u>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u> · <u>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u>	1. <u>공항 내 보안취약지역의 순찰 및 불법 출입국자의 조사</u>
2. <u>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의 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u>	2. <u>불법 환승객의 조사 및 관리</u>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3. <u>출입국심사장 보안 관련 상황실 운영 및 관리</u>
4. <u>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해당 이민 특수조사대장이 소속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조사의</u> <u>위한 사항</u>	4. <u>그 밖에 불법출입국 예방에 관한 사항</u>
5. <u>법무부장관이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u>	<삭 제>
6. <u>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u>	<삭 제>
7. <u>제3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고발 및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의 심사결정</u>	<삭 제>

⑳ 정보분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승객·승무원의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2의2.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2의3. 출입국 선박 등의 출입항 보고서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출입국심사 관련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1> 의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⑳ 감식과장-----
-----.

1.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 등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위·변조수법의 연구·분석

2.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위한 출입국사범의 조사

<삭 제>

<삭 제>

3. 위·변조여권의 식별요령 등에 관한 자료집의 발간 및 교육

4. 대내·외의 위·변조여권·사증 등에 대한 감식지원

5. 위·변조여권·사증 등의 감식장비 관리

6.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얼굴 정보의 분석

7. 그 밖에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감식에 관한 사항

<21> 이민특수조사대장-----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내의 위생관리
2. 보호외국인의 건강진단 및 진료
3. 의료기기 및 의약품관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의 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4.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해당 이민특수조사대장이 소속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조사의뢰한 사항
5.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6.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제3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고발 및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의 심사결정

<22>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관련 기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2.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정
보화자료의 보존·관리

3. 정보화장비(서버, 통신장비
등)의 운영·관리

4.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통
계작성

5.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서울출입국·외국인
청의 출입국정보화센터에 한
한다)

6.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정
보화자료의 외부기관 제공과
관련 전산망 운영 및 관리

7.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
번호부여 및 관리(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의 출입국정보화센
터에 한한다)

<23> 전자비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2> 의무과장-----

-----.

1.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
소 내의 위생관리

2. 보호외국인의 건강진단 및
진료

3. 의료기기 및 의약품관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3>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
-----.

1. <u>전자민원으로 신청한 각종 허가 또는 신고처리에 관한 사무</u> 2. <u>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u> 3. <u>그 밖에 전자민원에 관한 사항</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4> <u>보안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 1. <u>공항 내 보안취약지역의 순찰 및 불법 출입국자의 조사</u> 2. <u>불법 환승객의 조사 및 관리</u>	1. <u>정보화 관련 기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u> 2. <u>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보존·관리</u> 3. <u>정보화장비(서버, 통신장비 등)의 운영·관리</u> 4. <u>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통계작성</u> 5. <u>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정보화센터에 한한다)</u> 6. <u>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외부기관 제공과 관련 전산망 운영 및 관리</u> 7. <u>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정보화센터에 한한다)</u> <24> <u>전자비자센터장</u>----- -----. 1. <u>전자민원으로 신청한 각종 허가 또는 신고처리에 관한 사무</u> 2. <u>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u>
--	---

<u>3. 출입국심사장 보안 관련 상 황실 운영 및 관리</u>	<u><삭 제></u>
<u>4. 그 밖에 불법출입국 예방에 관한 사항</u>	<u>3. ----- 전자민원-----</u>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757</u>	.	<u>761</u>	+4	
일반직 계	.		<u>726</u>	.	<u>730</u>	+4	
서기관	.		<u>18</u>	.	<u>17</u>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u>1</u>	.	<u>2</u>	+1	
시설주사보	.		<신 설>	.	<u>1</u>	+1	
식품위생서기	.		<신 설>	.	<u>1</u>	+1	

• <u>공업서기보</u> • •	• <u><신 설></u> • •	• <u>2</u> • •	+2
--	--	--	-----------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757</u>	• <u>761</u>	+4
•	•	•	
•	•	•	
일반직 계	<u>726</u>	<u>730</u>	+4
•	•	•	
•	•	•	
서기관	<u>20</u>	<u>19</u>	-1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u>	<u>2</u>	+1
•	•	•	
•	•	•	
<u>시설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u>식품위생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u>공업서기보</u>	<u><신 설></u>	<u>2</u>	+2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130</u>	• <u>134</u>	+4
일반직 계	<u>116</u>	<u>120</u>	+4
•	•	•	
•	•	•	
검찰사무관(교수)	<u>3</u>	<u>7</u>	+4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16,369</u>	.	<u>16,504</u>	+135	
일반직 계	.		<u>16,369</u>	.	<u>16,504</u>	+135	
교감	.		<u>1,424</u>	.	<u>1,437</u>	+13	
교위	.		<u>1,788</u>	.	<u>1,807</u>	+19	
교사	.		<u>5,553</u>	.	<u>5,603</u>	+50	
교도	.		<u>6,037</u>	.	<u>6,090</u>	+53	
	.		.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566</u>	• <u>2,568</u>	+2
일반직 계	<u>2,566</u>	<u>2,568</u>	+2
•	•	•	
•	•	•	
출입국관리사무관	<u>100</u>	<u>101</u>	+1
•	•	•	
•	•	•	
출입국관리주사보	<u>691</u>	<u>692</u>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의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566</u>	• <u>2,568</u>	+2
일반직 계	<u>2,566</u>	<u>2,568</u>	+2
•	•	•	
•	•	•	
출입국관리사무관	<u>112</u>	<u>113</u>	+1
•	•	•	
•	•	•	
출입국관리주사보	<u>691</u>	<u>692</u>	+1
•	•	•	
•	•	•	